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9.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모호한 인가의 정의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여 해석 논란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외 지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입지조사표 제출과 같은 과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가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석논란 방지(제2조)

- (추가)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에 대한 제출사항 삭제(안 제3조제3항)

- (삭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조사표 제출

다. 중복된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문맥 명확성 확보(안 제4조)

라. 조문 내 인용된 법률명에 대한 통일적 정비(안 제3조제1항, 제6조)

마.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9. ~ 8. 24.(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부설한**”을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부지경계**”를 “**부지 경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별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담양군 계획 조례」 제66조에 의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예정부지가 가축사육가능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일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사육 불가능한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를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 내지”를 “법 제11조와”로, ““법” 위반”을 “법 위반”으로, “3년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설”을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으로 한다.

별표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u>이라한다</u>)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 개정 2009.6.15.>	제1조(목적) ----- ----- - <u>이라 한다</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정의) ----- ----- <u>뜻</u> 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죽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u>각 호</u>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 ----- ----- ----- ----- ----- . -- ----- <u>각 목</u>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	다. ----- -----

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u>부설한</u> 계류 장 라.·마. (생 략)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인가의 <u>부지경계</u> 기준 반경 1 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 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부개정2009.6.15. 일부개정 2019.2.1., 2023.6.1.> 4. ~ 6. (생 략) <u><신 설></u>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 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 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 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 0.9.30., 2023.2.24.> 1. (생 략)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 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 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	----- ----- <u>설치된</u> ----- - 라.·마. (현행과 같음) 3. ----- ---- <u>부지 경계</u> ----- ----- ----- ----- ----- 4. ~ 6. (현행과 같음) 7.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u>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u> <u>을 말한다.</u>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7조</u> ----- ----- 「<u>환경정 책기본법</u>」 제38조 ----- -----
---	--

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 한 지역	3.-----제12조----- -----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 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의 지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 -----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 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5. -----제3조-----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 은 해당지역 2분의1 세대의 동 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하며, 별 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 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담양군 계획 조례」 제66조에 의한 개 발분과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 ----- ----- -----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

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예정
부지가 가축사육가능 구역과 불
가능한 구역일 경우에는 전체면
적중 사육 불가능한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
육할 수 있다.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
 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2
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
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
분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는 배
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례)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
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는 -----

 -.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 법 제
11조와 -----

 ----- 법
위반-----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
 -----.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제3조제2항 관련)				<삭 제>
항 목	조 사 점 수 (배점)		점 수	
합계	8항목 (100점)			
1) 신 청 자 실거주기간	① 3년미만(0) ② 3~5년이상(10) ③ 5년이상(20)			
2) 사 육 형 태	① 담양군 미거주 사육(0) ② 담양군 관내 실거주 사육(10) ③ 축사주변 1,000m이내 실거주 사육(20)			
3) 축 사 형 태	① 신축(5) ② 사육환경개선 이전(10)			
4) 입 지 (주변세대수)	① 20세대이상(0) ② 11~20세대(3) ③ 6~10세대(6) ④ 5세대미만(10)			
5)배출시설 면적 (추가확보)	① 10%미만(0) ② 11%~30%(3) ③ 31~50%(6) ④ 51% 초과(10)			
6)처리시설 면적 (추가확보)	① 10%미만(0) ② 11%~30%(3) ③ 31~50%(6) ④ 51%초과(10)			
7) 축 종 별 사 육 신 청 두 수	소 (젖소)	① 200두이상(0) ② 151~200두(3) ③ 101~150두(6) ④ 100두미만(10)		
	돼지	① 1,501두이상(0) ② 1,001~1,500두(3) ③ 501~1,000두(6) ④ 500두미만(10)		
	닭	① 5,001수이상(0) ② 3,001~5,000수(3) ③ 1,001~3,000수(6) ④ 1,000수미만(10)		
	오리	① 5,001수이상(0) ② 2,001~5,000수(3) ③ 501~2,000수(6) ④ 500수미만(10)		
	개	① 101마리이상(0) ② 51~100마리(3) ③ 21~50마리(6) ④ 20마리미만(10)		
	기타	① 101마리이상(0) ② 51~100마리(3) ③ 21~50마리(6) ④ 20마리미만(10)		
8)읍면장(지역) 의 견	【의견】 ① 반대 의견(0) ② 찬성 의견(10)			
비 고				